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3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 임이자 • 이수진 • 이종배

고동진 • 최은석 • 김위상

박성훈 · 조승환 · 유용원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꽃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화로서 합성섬유와 철심(중금속)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매립 처리됨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증가됨. 또한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어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면서 화학물질이 용출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에도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연간 1,557톤의 조화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4,304톤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영하는 사업자"를 "경영·운영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u>경</u>	<u>경</u>
<u>영하는 사업자</u> 는 1회용품의 사	<u>영·운영하는 자</u>
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	
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법인묘지, 「국립묘
	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
	<u>묘지</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